

[칼럼] 잊혀질 권리

윤종수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검색 엔진 구글(Google)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위 판결은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할 때 사례로 자주 인용되던 사안과 관련이 있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Costeja Gonzalez는 2010년 3월 5일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원인 AEPD(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에 '구글 검색에서 내 이름을 치면 나의 부채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1998년도 신문기사가 검색결과로 뜨는데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부채도 모두 청산되었음에도 계속 그 기사를 검색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기사를 실은 La Vanguardia 신문사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및 구글 스페인을 상대로 위 기사의 삭제와 검색결과의 제거 또는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AEPD는 위 기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법한 기사라는 이유로 La Vanguardia에 대한 기사 삭제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글과 구글 스페인은 검색엔진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Processing)한 것이고, 그 정보가 개인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개인정보주체가 그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원 기사의 삭제 여부에 상관없이 검색결과에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보호 당국에서 인정되었다 하여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최근에 나온 유럽사법재판소의 위 판결은 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후속 판단이다. 구글과 구글 스페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스페인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심리도중 위 결정의 기초가 된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그 후에 등장한 기술인 인터넷 검색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구하였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장문의 판결문은 스페인 고등법원의 질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면서 AEPD의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검색엔진이 정보를 찾고 이를 자동적으로 인덱싱(indexing)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준칙 제2조 (b)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해당하고,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같은 조 (d)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에 해당한다. 위 판단에 따르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준칙의 규제대상이 된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준칙은 제6조 1항의 c 내지 e호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적절하고(adequate), 관련성 있고(relevant), 과도하지 않아야하며(not excessive), 정보의 정확성(accurate)과 최신성(up to date)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식별성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사와 같이 기사에 담긴 정보가 정보주체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처음 게재된 뒤로 16년이 흐른 경우는 애초에 수집단계에서는 위 조건들을 충족하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수정, 삭제, 차단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제12조 b호에 따라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그 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데 그간의 논쟁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잊혀질 권리는 그 취지에 대한 폭 넓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법리의 측면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저장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접근을 극대화하는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고도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잊히던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영원히 남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자 ‘망각의 회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EU가 새로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초안에 잊혀질 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다. GDPR의 위 규정은 가뜰이나 ‘디지털 주홍글씨’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던 차에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GDPR은 회원국에게 직접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잊혀질 권리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법리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GDPR의 해당 규정 역시 일정한 요건과 예외 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삭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이를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일반적인 삭제청구권으로 받아들였다.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 즉 블로그 등 일반적인 온라인 게시물이나 기사 등의 콘텐츠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준칙 역시 자동처리 되는 데이터 처리나 파일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자동적 처리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법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그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에 담긴 개인정보에 한정된다. 그렇

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신의 관한 글이나 기사 등의 삭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기사 자체에 대한 삭제청구를 기각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이다.

안 그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침해정보의 삭제요청과 그에 따른 임시조치가 사실상 정보주체의 피해주장 만으로 광범위한 삭제를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와 정보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삭제권으로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은 검색결과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었다는 의미도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정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삭제권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 삭제의 요건도 무조건적인 삭제가 아니라 정보가 정보주체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처음 게재된 뒤로 16년이 흐르면서 수집, 처리 목적에 비추어 적절성, 관련성, 과도한 처리에 해당하지 않을 조건과 최신성 및 처리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식별성 있는 상태의 보관을 금지하는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준칙의 해석을 통해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업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EU에서는 검색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온데다가, 어떤 정보가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개인정보보호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성 등의 조건에 반하게 되는지를 매번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 판결을 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있어 역사의 기록과 보존의 사회적 가치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평판은 다수에 의한 상호작용과 평가가 결합하여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이는 시장과 사회적 교섭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평판형성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판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 판결 역시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정보처리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검색을 통한 정보취득에 대한 공중의 이익보다 우선하지만, 정보에 따라서는 공적 생활에 있어 정보주체의 역할과 같은 사유 때문에 정보접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개인정보주체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서 법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공중의 추상적인 이익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판단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가치가 몰각될 가능성이 크다.

위 판결을 기화로 국내에서도 다시 한 번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6조에서 무조건적인 개인정보의 삭제권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어 비록 EU의 판결이긴 하지만 국내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화 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보 축적과 접근성의 무한정 확대라는 단계에서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적 수준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가 갖는 가치와 역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는 결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든가 힘 있는 자의 정보통제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들의 기본권이 정보기술과 산업의 편익을 이유로 희생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 역시 명확하다. Costeja Gonzalez는 위 판결로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셈이 되었지만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단계를 열 단초를 주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받을 만하다.

* 위 칼럼은 2014년 5월 29일 자 <네이버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